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14791
등록일자	2015.4.13.
결재일자	2015.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경민	한문석	박선옥	04/14 김창현		
협조자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계획



2015. 4. .

강 남 구
(사 회 복 지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관련 규정 및 근거</p>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p>·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p>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추진 경위</p>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p>· 추진경위 : -----</p>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예산 사항</p>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p>· 해당사항 없음.</p>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수혜자 및 범위</p>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p>·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최종증장애인</p>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분야 별 검토사항</p> <p style="color: green;">[계속 :] [신규 :]</p>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p>① 관련부서 협조 ----- ()</p> <p>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p> <p>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p> <p>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p> <p>⑤ 시장조사 ----- ()</p> <p>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p> <p>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O)</p> <p>⑧ 행사관련 의견 및 선거법 ----- ()</p> <p>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p>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타 기관 사 례</p>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전문가 자 문</p>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p>· 해당사항 없음.</p>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계획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I 큰 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1.4 제정]
- 201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II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등록장애인 현황(2015.1. 기준)

(단위 : 명)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6,147	1,798	2,564	2,883	2,102	3,287	3,513

- 사업기간 : 2015. 2. 1 ~ 2016. 1. 31(1년)

- 이용대상 : 1급, 2급 등록장애인

- 대상연령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 65세 이상 도래자

※ 65세 이상 도래자 : 만 65세 도래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의 판정을 받은자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 방문목욕

구 분	국.시비 지원	시비추가
대 상	◦ 1·2급 장애인	◦ 국고보조사업 1등급 장애인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인 자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급여액	◦ 42만원 ~ 1,040천원	◦ 35만 2천원 ~ 308만 4원
본인부담	◦ 무료 ~ 219,500원	◦ 무료
인정조사	◦ 국민연금공단	◦ 동주민센터
사업비	◦ 8,204,625천원	◦ 1,045,744천원
재 원	◦ 국50% : 시32.5% : 구17.5%	◦ 시비 100%

○ 서비스단가/시간당

서비스 내용	단 가	
	활동보조	일반(시간당)
심야(22:00~06:00)		13,210원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13,210원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 내 목욕)	72,540원
	차량이용(가정 내 목욕)	65,410원

○ 제공기관 : 5개소(활동보조 3개소, 방문간호 1개소, 방문목욕 1개소)

구 분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활동보조	성모자애복지관	김은옥	강남구 헌릉로757길 35(울현동)
	Good Job 자립생활센터	김재익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역삼동)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강남구 광평로51길 8, 401호(수서동, 로얄프라자)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최미경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0(일원동)
방문목욕	하상장애인복지관	김호식	강남구 개포로 613(개포동)

※ 제공기관 지정 : 2015.02.01~2017.01.31(2년간)

○ 위원회 현황 : 2개(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14.9.1 구성)

구 분	수급자격심의위원회(7명)	이의신청위원회(7명)
심의대상	.장애1·2급 국비사업 신규, 변경신청 건	.장애1·2급 국비사업 신규, 변경신청 건
기 능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유효기간 연장, 추가급여 인정	.서비스 인정.등급편정 관련 민원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구 성	.위원장 1명(위원중 호선)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장애인단체, 의료인, 사회복지사, 지자체공무원, 기타 장애인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 관련자	.위원장 1명(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장애인단체, 의료인, 사회복지사, 지자체공무원, 기타 장애인복지 또는 활동지원사업 관련자
운 영	.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	.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개 최	. 월 1회(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 이의신청 접수 시(필요시 서면심사 가능)
심의수당	. 1회 7만원(3시간 이상 : 10만원)	. 1회 10만원(3시간 이상 : 15만원)

○ 2014년 사업실적

- 집행액 : 9,676,493천원
- 재원비율 : 국시비보조사업 - 8,937,350천원 (국비50%, 시비32.5%, 구비17.5%)
 - 시비추가사업 - 727,735천원 (시비100%)
 - 구비지원사업 - 11,418천원 (구비100%)

(단위 : 명)

구 분	이 용 인 원	
	활동보조	방문목욕
국시비보조사업	775	2
시비추가사업	123	0
구비추가사업	25	0
합 계	923	2
	925	

III 사업 세부 기준

국 · 시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5. 2. 1 ~ 2016. 1. 31(1년)

-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1·2급 등록장애인
- 목표인원 : 950명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 인정조사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후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급여량 결정
- 급여량
 - 기본급여 : 42만원 ~ 104만원
 - 추가급여 : 8만 9천원 ~ 241만 1천원
 - 급여량 세부내역

기본 급여	등급(인정점수)		월 지원액
	1등급(380-470)		104만원
	2등급(320-379)		83만원
	3등급(260-319)		62만원
	4등급(220-259)		42만원
추가 급여 (중복 가능)	해 당 조 건		월 지원액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241만 1천원
	인정점수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가구		70만 5천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가구		17만 6천원
	출산가구		70만 5천원
	자립준비		17만 6천원
	학교생활		8만 9천원
	직장생활		35만 2천원
	보호자 일시부재		17만 6천원
	최종증 수급자 가구 구성원의 직장·학교 생활		64만 3천원

■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본인부담율		기본급여	추가급여	
	기본	추가			
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	정액	면제	20,000	면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6%	2%	25,300~62,400	1,700~48,200
	100%이하	9%	3%	37,900~93,600	2,600~72,300
	150%이하	12%	4%	50,600~99,000	3,500~96,400
	150%초과	15%	5%	63,300~99,000	4,400~120,500

※ 본인부담금 세부내역 : 별첨 참조

시비 추가 사업

- 사업기간 : 2015. 2. 1 ~ 2016. 1. 31(1년)
- 이용대상 : 국고보조사업 1등급 장애인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인 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대상연령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 65세 이상 도래자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인정조사 : 인정조사표에 따른 동주민센터 사회담당이 조사 실시
- 급 여 량

지원분류	월급여액 (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3,084천원 (350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1인 가구	1,762천원 (200시간)
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미만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1인 가구	1,057천원 (120시간)
장애1급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국비1등급	881천원 (100시간)
장애1급 (인정점수 200점 ~ 220점미만)	352천원 (40시간)
시설 퇴소자 (적격자심의선발)	264천원 (30시간)

- 본인부담금 : 무료

구비 추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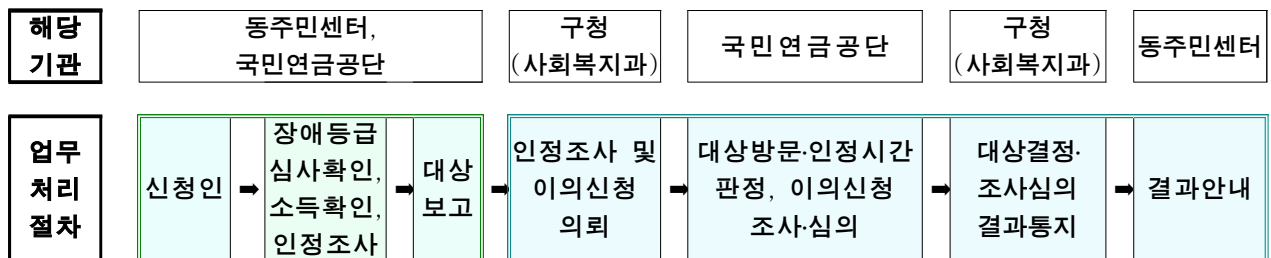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15. 2. 1 ~ 2016. 1.31
- 지원대상 : 25명(2015.2.21기준) ※예산 범위 내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자 중 1인 또는 취약가구
- 대상연령 :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보건복지부 연령 기준)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지원)
- 급 여 량 : 월 264,300원 (30시간)
 - 1인 최대 급여량

구 분		지 원 급 여	월 지원시간
합 계		국비+시비+구비	771
국비	기본급여	1등급	118
	추가급여	최중증 독거·취약	273
시 비		국고1등급 지원자 중 와상·사지마비 독거 장애인	350
구 비		최중증 독거·취약	30

○ 국비 및 시비 바우처 모두 사용 후 구비 사용 가능

- 수급결정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시간이 필요하여 신청한 대상자 중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본인부담금 : 무료

IV 업무처리 절차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입금
- 인정조사 : 총 470점 만점
- 변경 · 이의신청 처리

구분	변경 신청	이의 신청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건강상태 변화가 생긴 경우	통보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90일 이내 신청)
서류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건강상태 변화에 한함)	이의신청서
절차	○ 국시비지원, 구비: 동(접수) ➔ 구(자격확인·의뢰) ➔ 국민연금공단(심의·의결) ○ 시비지원: 동(접수 및 재조사) ➔ 구(자료 입력) ➔ 서울시(검토·승인)	
심사기관	수급자격결심위원회	이의신청심의회
특이사항	-동일사유로 인한 변경신청은 1회에 한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V 소 요 예 산

■ 총 예산액 -----	11,188,096 천원
○ 국고보조사업 -----	9,945,000 천원
(국비 4,972,500천원, 시비 3,232,125천원, 구비 1,740,375천원)	
○ 시비추가사업 -----	1,045,744 천원
○ 구비지원사업 -----	184,752 천원
○ 위원회수당 -----	12,600 천원

■ 재 원

국·시비 지원사업	시비추가 사업	구비지원 사업	위원회 수당
국비 50%	시비 100%	구비 100%	구비 100%
시비 32.5%			
구비 17.5%			

■ 예산과목

- 사업비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 위원회수당: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 국.시비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약 후 정산처리
- 구비 : 매월 해당 사업기관장의 청구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지급

V 행정 사항

- 1회 이상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처분 결과보고
- 이용량 및 대기인원 증가 등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제공기관 추가선정
붙임 1. 활동지원 인정조사항목
2. 본인부담등급표
3. 건강보험료 조건표

[붙임 1 :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일상생활 동작영역	1. 옷 갈아입기	① 0, ② 10, ③ 20, ④ 40	7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목욕하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3. 식사하기	① 0, ② 30, ③ 60, ④ 90	
	4.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① 0, ② 10, ③ 15, ④ 20	
	5. 옮겨 앉기	① 0, ② 10, ③ 15, ④ 20	
	6. 걷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7. 화장실 사용하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계	260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만15세 이상)	1. 전화 사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15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물건사기	① 0, ② 10, ③ 15	
	3. 식사준비	① 0, ② 10, ③ 20, ④ 30	
	4. 집안일	① 0, ② 5, ③ 10, ④ 15	
	5. 빨래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15	
	6. 약 챙겨 먹기	① 0, ② 10, ③ 15	
	7. 금전관리	① 0, ② 5, ③ 10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0, ② 3, ③ 5, ④ 10	
	계	125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만6세 이상 15세 미만)	1. 전화 사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20	6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물건사기	① 0, ② 10, ③ 20	
	3. 약 챙겨먹기	① 0, ② 10, ③ 20,	
	4. 금전관리	① 0, ② 10, ③ 20,	
	5.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20	
	6. 본인물건 관리하기	① 0, ② 15, ③ 25	
	계	125점	
장애특성 고려영역	1. 휠체어사용	① 0, ② 15, ③ 30	1개 항목의 점수만 산정한다
	2. 청각기능	① 0, ② 20, ③ 40, ④ 60	
	3. 시각기능	① 0, ② 20, ③ 40, ④ 60	
	4. 인지기능	① 0, ② 30, ③ 60	
	5. 정신기능	① 0, ② 30, ③ 60	
	계	60점	
사회환경 고려영역	1. 사회활동 참여	① 0, ② 5, ③ 10	4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위험상황 대처능력	① 0, ② 3, ③ 5	
	3.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능력	① 0, ② 3, ③ 5	
	4.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	① 0, ② 3, ③ 5	
	계	25점	
총 점		470점	4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다

[붙임 2 : 본인부담금 등급표]

국·시비 지원 사업 기본급여

(단위: 원)

구 분		4등급 (422천원)	3등급 (628천원)	2등급 (834천원)	1등급 (1,040천원)
기초수급자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차상위계층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평균 가구소득	50%이하	25,300	37,600	50,000	62,400
	100%이하	37,900	56,500	75,000	93,600
	150%이하	50,600	75,300	99,000	99,000
	150%초과	63,300	94,200	99,000	99,000

국·시비 지원 사업 추가급여

(단위: 원)

구 분		89천원	171천원	352천원	643천원	705천원	2,411천원
기초수급자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차상위계층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1,700	3,500	7,000	12,800	14,100	48,200
	100%이하	2,600	5,200	10,500	19,200	21,100	72,300
	150%이하	3,500	7,000	14,000	25,700	28,200	96,400
	150%초과	4,400	8,800	17,600	32,100	35,200	120,500

[붙임 3 : 가구별 ·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구별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2015)

가 구 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종합(직장+지역)					
				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150%이하	150%초과	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150%이하	150%초과	50%이하	50%초과~100%이하	100%초과~150%이하	150%초과						
1인	769천원	1,538천원	2,307천원	24,280초과 ~ 47,165이하	47,165초과 ~ 70,377이하	70,377초과 ~ 94,100초과	94,100초과 ~ 141,277이하	141,277초과 ~ 202,271이하	202,271초과 ~ 263,818이하	263,818초과 ~ 317,317이하	317,317초과 ~ 3,571이하	3,571초과 ~ 26,513이하	26,513초과 ~ 62,319이하	62,319초과 ~ 97,779이하	97,779초과 ~ 143,254이하	143,254초과 ~ 207,444이하	207,444초과 ~ 265,911이하	265,911초과 ~ 294,942이하	294,942초과 ~ 314,313이하		
2인	1,549천원	3,098천원	4,648천원	47,165초과 ~ 94,100이하	94,100초과 ~ 141,277이하	141,277초과 ~ 202,271이하	202,271초과 ~ 263,818이하	263,818초과 ~ 317,317이하	317,317초과 ~ 3,571이하	3,571초과 ~ 26,513이하	26,513초과 ~ 62,319이하	62,319초과 ~ 97,779이하	97,779초과 ~ 143,254이하	143,254초과 ~ 207,444이하	207,444초과 ~ 265,911이하	265,911초과 ~ 294,942이하	294,942초과 ~ 314,313이하	314,313초과 ~ 333,706이하	333,706초과 ~ 353,099이하	353,099초과 ~ 372,492이하	
3인	2,212천원	4,423천원	6,635천원	67,462초과 ~ 135,442이하	135,442초과 ~ 202,271이하	202,271초과 ~ 263,818이하	263,818초과 ~ 317,317이하	317,317초과 ~ 3,571이하	3,571초과 ~ 26,513이하	26,513초과 ~ 62,319이하	62,319초과 ~ 97,779이하	97,779초과 ~ 143,254이하	143,254초과 ~ 207,444이하	207,444초과 ~ 265,911이하	265,911초과 ~ 294,942이하	294,942초과 ~ 314,313이하	314,313초과 ~ 333,706이하	333,706초과 ~ 353,099이하	353,099초과 ~ 372,492이하	372,492초과 ~ 391,885이하	
4인	2,487천원	4,974천원	7,461천원	76,867초과 ~ 151,857이하	151,857초과 ~ 226,818이하	226,818초과 ~ 291,779이하	291,779초과 ~ 346,740이하	346,740초과 ~ 3,571이하	3,571초과 ~ 26,513이하	26,513초과 ~ 62,319이하	62,319초과 ~ 97,779이하	97,779초과 ~ 143,254이하	143,254초과 ~ 207,444이하	207,444초과 ~ 265,911이하	265,911초과 ~ 294,942이하	294,942초과 ~ 314,313이하	314,313초과 ~ 333,706이하	333,706초과 ~ 353,099이하	353,099초과 ~ 372,492이하	372,492초과 ~ 391,885이하	391,885초과 ~ 411,278이하
5인	2,633천원	5,266천원	7,899천원	80,471초과 ~ 161,863이하	161,863초과 ~ 243,784이하	243,784초과 ~ 305,176이하	305,176초과 ~ 360,137이하	360,137초과 ~ 3,571이하	3,571초과 ~ 26,513이하	26,513초과 ~ 62,319이하	62,319초과 ~ 97,779이하	97,779초과 ~ 143,254이하	143,254초과 ~ 207,444이하	207,444초과 ~ 265,911이하	265,911초과 ~ 294,942이하	294,942초과 ~ 314,313이하	314,313초과 ~ 333,706이하	333,706초과 ~ 353,099이하	353,099초과 ~ 372,492이하	372,492초과 ~ 391,885이하	391,885초과 ~ 411,278이하
6인	2,778천원	5,556천원	8,335천원	84,851초과 ~ 169,970이하	169,970초과 ~ 253,393이하	253,393초과 ~ 315,785이하	315,785초과 ~ 370,746이하	370,746초과 ~ 3,571이하	3,571초과 ~ 26,513이하	26,513초과 ~ 62,319이하	62,319초과 ~ 97,779이하	97,779초과 ~ 143,254이하	143,254초과 ~ 207,444이하	207,444초과 ~ 265,911이하	265,911초과 ~ 294,942이하	294,942초과 ~ 314,313이하	314,313초과 ~ 333,706이하	333,706초과 ~ 353,099이하	353,099초과 ~ 372,492이하	372,492초과 ~ 391,885이하	391,885초과 ~ 411,278이하
7인	2,924천원	5,847천원	8,771천원	89,521초과 ~ 178,944이하	178,944초과 ~ 271,771이하	271,771초과 ~ 334,163이하	334,163초과 ~ 389,124이하	389,124초과 ~ 3,571이하	3,571초과 ~ 26,513이하	26,513초과 ~ 62,319이하	62,319초과 ~ 97,779이하	97,779초과 ~ 143,254이하	143,254초과 ~ 207,444이하	207,444초과 ~ 265,911이하	265,911초과 ~ 294,942이하	294,942초과 ~ 314,313이하	314,313초과 ~ 333,706이하	333,706초과 ~ 353,099이하	353,099초과 ~ 372,492이하	372,492초과 ~ 391,885이하	391,885초과 ~ 411,278이하
8인	3,069천원	6,138천원	9,208천원	94,100초과 ~ 189,278이하	189,278초과 ~ 294,042이하	294,042초과 ~ 356,434이하	356,434초과 ~ 411,395이하	411,395초과 ~ 3,571이하	3,571초과 ~ 26,513이하	26,513초과 ~ 62,319이하	62,319초과 ~ 97,779이하	97,779초과 ~ 143,254이하	143,254초과 ~ 207,444이하	207,444초과 ~ 265,911이하	265,911초과 ~ 294,942이하	294,942초과 ~ 314,313이하	314,313초과 ~ 333,706이하	333,706초과 ~ 353,099이하	353,099초과 ~ 372,492이하	372,492초과 ~ 391,885이하	391,885초과 ~ 411,278이하